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328
----------	-------

발의연월일 : 2025. 9. 26.

발 의 자 : 송재봉 · 김문수 · 황명선
허성무 · 남인순 · 이수진
김우영 · 이병진 · 최혁진
전진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 또는 택시 정류장 등은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임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어 이용자와 주변 보행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금액은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에 비하여 상당히 낮아 흡연을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버스 또는 택시 정류장 표시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2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등).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5. 버스 또는 택시 정류장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6.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7. 횡단보도 표시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 ③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⑤ (생략)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 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 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 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u><신설></u>	5. 버스 또는 택시 정류장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 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구역(일반 공 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⑦ ~ ⑨ (생 략)

제34조(과태료) ①·② (생 략)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

6.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 철도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7. 횡단보도 표시가 설치된 곳 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 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34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⑤ -----제4항-----

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 수한다.	----- ----- --.
⑤ (생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